C - 110 - 2018

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

2018. 10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ㅇ 작성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

○ 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

ㅇ 제정경과

- 2018년 6월 건설안전분야 기준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ㅇ 관련규격 및 자료

- KOSHA GUIDE C-26-2017, 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

- KOSHA GUIDE C-31-2017, 추락방호망 설치 지침

o 관련 법규·규칙·고시 등

-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

-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-54호(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)

-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309호(가설공사표준시방서)

○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8년 10월 11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C - 110 - 2018

수직형 추락방망 설치 기술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43조 (개구부 등의 방호조치)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직형 추락방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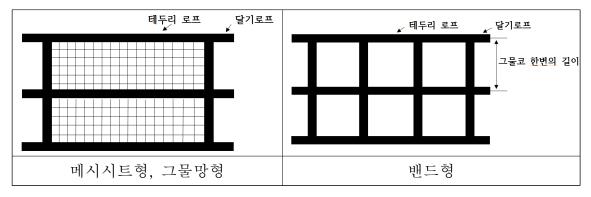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수직형 추락방망"이라 함은 건설현장에서 작업자가 위험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수직으로 설치하여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는 방망을 말한다.
 - (나) "그물코"라 함은 그물의 구멍부분을 말한다.
 - (다) "재봉사(絲)"라 함은 테두리 로프와 방망을 재봉하여 일체화하기 위한 실(인조섬유 등)을 말한다.
 - (라) "테두리 로프"라 함은 방망의 주변을 형성하는 로프를 말한다.
 - (마) "달기 로프"라 함은 테두리 로프의 모서리에 결속된 로프로 방망을 지지점에 부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로프를 말한다.

C - 110 - 2018

- (바) "정격설치하중"이라 함은 달기로프의 양끝을 당겨서 설치하는 하중을 말하며 그 하중은 2.4kN으로 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「산업안전보건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규칙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,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(이하 "안전인증고시"라 한다) 또는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구조 및 재료

- (1) 수직형 추락방망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(가) 수직형 추락방망은 메시시트형, 그물망형 또는 밴드형(교차하는 밴드를 재봉사 등으로 견고하게 결합시키는 구조)등으로 할 수 있으며, 그물망형의 경우 그물코 편성방법은 KOSHA GUIDE 「낙하물 방지망 설치 지침」에 따른다.



<그림 1> 수직형 추락방망의 종류(예시)

(나) 그물코 한변의 길이는 교차지점의 중심에서 중심간 거리로서 <표 1>과 같다.

구 분	*그물코 한변의 길이	
	(매듭의 중심간 거리)	
메시 시트형	12mm 이하	
그물망형	100mm 이하	
밴드형	370mm 이하	

<표 1> 수직형 추락방망 그물코 한 변의 길이

C - 110 - 2018

- (다) 수직형 추락방망은 끊어짐, 풀림, 뒤틀림, 얼룩, 벗겨짐,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.
- (라) 수직형 추락방망의 전 테두리에 걸쳐 테두리 로프가 있어야 한다. 다만, 밴드 구조의 경우와 별도의 테두리 로프가 없는 구조는 외각 밴드를 테두리 로프로 본다.
- (마) 방망의 나비(수직으로 설치 시 높이를 말함)는 1,500mm 이상, 길이는 5,000mm 이하여야 한다. 다만 300mm를 초과하는 발코니 파라펫 (parapet) 등의 치켜 올림부에 설치하는 방망의 나비는 1,200mm 이상으로 할 수 있다.
- (바) 달기 로프는 방망의 끝단에 설치해야 하며 750mm 이내마다 고정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.(다만, 바닥면에는 3,000mm이내)
- (2) 수직형 추락방망의 재료는 다음과 같이 한다.
 - (가) 방망사, 테두리 로프, 달기 로프의 재료는 KS K 2076(텍스타일-인조섬유-일반명칭)에서 정하는 나일론, 폴리에틸렌, 폴리에스테르 및 폴리프로필렌 등의 인조섬유를 사용한다.
 - (나) 연결부는 내식성 재료 또는 도금 처리된 재료를 사용한다.

5. 성능

(1) 방망사의 인장 하중은 <표 2>와 같다.

ठॅ	당 목	성 능	비	고
인장 하중	메시 시트형	1.47kN 이상		
	그물망형	KS F 8082(추락 방호망) 표 1. 방망사 인장 하중에 따름		
	밴드형	9.8kN 이상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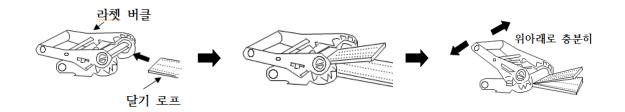
<표 2> 수직형 추락방망의 성능

C - 110 - 2018

- (2) 수직형 추락방망의 테두리 로프(외곽 밴드 포함) 및 연결부(연결부품 포함)의 인장하중은 각각 14.7kN 이상이어야 한다.
- (3) 방망의 테두리 로프와 연결부(연결부품 포함)를 2.4kN의 하중으로 설치 (설치거리는 2,500mm)하고 48시간 경과한 다음, 설치하중 2.4kN으로 재설치한 후 이때부터 130시간 경과했을 때 그 하중의 감소율이 20%이내이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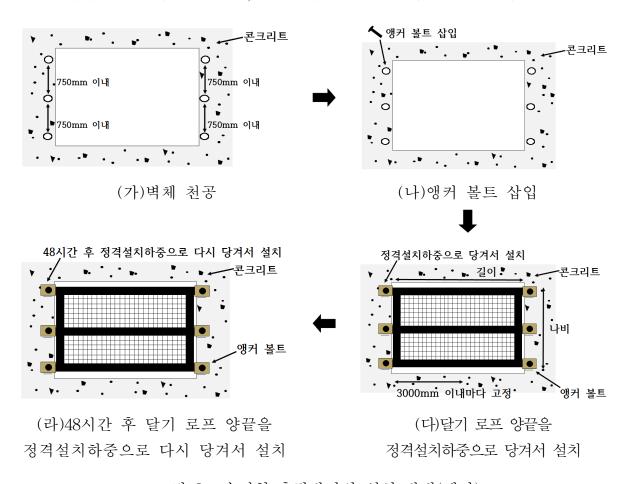
6. 설치 방법

- (1) 수직형 추락방망을 설치할 위치를 선정하여 벽체 등에 드릴 등으로 천공한 후 홀의 잔여물을 반드시 제거한다. 단, 홀의 수직(높이)방향으로 간격은 750mm 이내이어야 한다.
- (2) 벽체 등의 홀에 앵커볼트를 삽입 후 정격설치하중의 장력을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(3) 설치 및 해체작업은 건축물내부에서 실시하여야 하며,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(4) 벽체 등에 고정 된 앵커 볼트에 라쳇 버클을 고정한다.
- (5) <그림 2>와 같이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결부(라쳇 버클 등)를 정격설치하중으로 견고히 설치한다. 다만, 발코니 파라펫(parapet) 등의 치켜올림부 300m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(높이)방향으로 1,200mm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.



<그림 2> 연결부(라쳇 버클 등)와 달기 로프의 결합 방법(예시)

(6) 바닥에는 길이방향으로 3.000mm이내마다 테두리 로프를 고정한다.



<그림 3>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 방법(예시)

(7) 해체 시에는 설치의 역순서로 작업하며 연결부(라쳇 버클 등)을 해체한 후 벽체 등의 달기 로프를 제거하는 순서로 진행하여야 한다.

7. 수직형 추락방망의 관리기준

(1) 수직형 추락방망은 최초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, 그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.

C - 110 - 2018

- (2) 수직형 추락방망 주변에서 용접이나 컷팅 작업을 할 때,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, 용접방화포 등으로 불꽃, 불티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하고 작업이 끝나면 방망의 손상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(3) 자재의 반입 등으로 일시적으로 수직형 추락방망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종료 후 즉시 복원하여야 한다.
- (4) 수직형 추락방망의 방망 또는 연결부 부분이 파손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.
- (5) 벽체 등의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앵커 볼트를 설치할 경우 제품이 탈락 될 우려가 있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수직형 추락방망의 설치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기대어 놓지 않아야 한다.
- (7) 부위별로 연결부(라쳇 버클 등)의 장력이 다를 경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요구되는 정격설치하증이 감소 될 우려가 있기에 일정 주기마다 느슨함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.